

대학원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08.03.01. 제정
 2013.12.19. 일부개정
 2014.03.01. 일부개정
 2015.09.01. 일부개정
 2017.03.01. 일부개정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최신 의과학과 관련 인문사회학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와 이를 위한 '정의' 실현에 매진하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국내외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천적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세계적 수준의 의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제 3 조 (교과과정) 대학원에는 전문석사학위인 '의무석사' 과정과 의과학박사학위인 'MD-PhD 복합학위' 과정을 둔다.
- 제 4 조 (입학자격) 대학원의 의무석사 및 MD-PhD 복합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 5 조 (입학전형) ①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 및 지원절차, 입학전형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6 조 (입학 공정관리)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입학공정관리 및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7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의무석사'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다.
 ② '의무석사' 과정의 재학연한은 9년이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MD-PhD 복합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7년이다.
 ④ 'MD-PhD 복합학위' 과정의 재학연한은 15년이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4.3.1>
- 제 8 조 (수업)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공휴일 및 야간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 제 9 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의무석사과정 6학기, MD-PhD 복합학위과정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군복무기간은 제외).<개정 2014.3.1>
- 제 10조 <삭제>
- 제 11조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 12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 13조 (학점인정) ①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국내 타교 대학과 본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의 학점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제 14조 (지도교수)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제 15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3.1>
- 제 16조 (학위청구 자격) ① ‘의무석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174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석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재학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국내외 SCI 급 학술지 혹은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에 논문을 게재(in press 포함)한 대학원생은 학위청구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13.12.19.>
 ② ‘의과학박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208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재학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국내외 SCI 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in press 포함)한 대학원생은 해당 ‘논문 별책’ 혹은 ‘in press 논문’ 및 ‘게재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청구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13.12.19.>
 ③ ‘의무석사’ 학위취득을 위해 석사 학위청구논문을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적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3.1>
- 제 17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학위청구에 필요한 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의무석사’는 9년, ‘의과학박사’는 1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군복무기간은 제외).<개정 2014.3.1>
- 제 18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의무석사’ 혹은 ‘의과학박사’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위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논문: 3부 (‘의무석사’), 5부 (‘의과학박사’)
 3. 논문 제출 승인서 (지도교수 작성)
- 제 19조 (학위청구논문 용어)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한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0조 (졸업자격시험의 종류) ① 졸업자격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졸업시험으로 판정한다.
 ② 외국어 시험은 재학기간 중 고려대학교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영어시험으로 대체하며,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한다(TOEIC 750점, TOEFL : PBT기준 560점, CBT기준 220점, IBT기준 80점, TOSEL(A) 608점, TEPS 667점, IELTS 6.0점 이상)
- 제 21조 (논문심사위원회) ①의무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교육부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중 교육부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
 ② 의과학박사의 논문심사는 일반대학원 의학과에 준한다.<개정 2014.3.1>
- 제 22조 (논문심사) ① 학위 논문의 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필요에 따라 심사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4.3.1>
 ② 논문의 최종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제 23조 (학위수여 심의) 졸업요건의 최소 이수학점, 외국어시험, 종합/졸업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24조 (장학금; 의무석사) ①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은 전 학기에 전공 12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균 평점이 3.5이상을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장학금 지급은 전 학기 성적, 가정환경, 프로그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매학기 장학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인원을 정한다.
- 제 25조 (장학금; 복합학위) ① MD-PhD 복합학위 과정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생활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7년으로 한다.
- ② 본 장학금은 직전 학기의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지급된다.
- ③ 본 과정을 이수한 자는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분야에서 3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 ④ 본 과정을 자진포기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 제 26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7조 (연구생)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의 지원자격은 의무석사 학위과정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 제 28조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① 의학전문대학원 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그 밖의 본 의학전문대학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 29 조 (유급) ① 유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유급: 의무석사과정 1, 2학년 및 MD-PhD 복합학위과정 1, 2학년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 가. 수강 교과목 중 어느 하나에 F 등급이 있는 경우
 - 나. 학기의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경우
 2. 학년유급: 의무석사과정 3, 4학년 및 MD-PhD 복합학위과정 6, 7학년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 가. 수강 교과목 중 어느 하나에 F 등급이 있는 경우
 - 나. 학년의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경우
 - 다. 휴학 또는 제적처리될 경우.
- ② 유급 시 해당 교과목(또는 학년)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교과목(또는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1. 학기유급: 기 수강 교과목 성적이 D+ 등급 이하인 과목을 다시 이수 (단, 기 수강 교과목 성적이 C 등급 이상인 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2. 학년유급: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
- 제 30조 (제적) ① 학칙 제26조가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의무석사과정 1,2학년의 경우 동일 학기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신설 2015.9.1.>
 2. 의무석사과정 3,4학년의 경우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개정 2015.9.1.>

3. 재학기간 중 4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② 휴학으로 인한 유급은 제 1항의 횟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 31조 (내규)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32조 (준용)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9조(유급) 개정세칙은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1항 및 2항 개정]
2. (경과조치) 2014년도 및 2015년도 수료자는 제 16조 제1항의 '의무석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172학점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 30조, 제31조, 제32조 개정]
2. (제적에 관한 경과조치)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횟수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2. (제적에 관한 경과조치)제30조 제1항의 횟수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